

구리 도시관리계획(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)
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구리시 인창동 70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(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5년 10월 10일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- 1)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
- 2) 공동주택용지(변경없음)
- 3) 준주거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 획 내 용				
				기정		변경		
D1~ D3	-	용도	허용	D1~D3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구리시 도시계획 조례」 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			
			용도		3			
			불허용도		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, 교정 및 군사 시설, 발전시설, 장례식장			
			건폐율	D1, D2		70% 이하		
		D3		70% 이하				
		용적률	D1, D2		600% 이하			
			D3	기준	500% 이하			
				상한	600% 이하			
		높이	D1, D2		-		-	
			D3		20층 이하		24층 이하	
		배치			·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출로변과 건축선을 가급적 일치시켜 건물 상호간의 조화를 유도하고 시각적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			
		형태			-			
		색채			-			
건축선			-					

※ 상한용적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에서 완화하여 적용한 용적률

- 4)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고시 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